

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교통위원회 송도호 의원

존경하는 선배·동료의원 여러분!

송도호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발의한

「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설명
드리겠습니다.

현재 택시 차령제도는 차량의 실제 상태나 운행 가능성과는 관계없이,
연한이 끝나면 무조건 폐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그 결과 멀쩡히 운행
할 수 있는 차량도 조기에 폐차되고 있습니다. 자원 낭비일 뿐 아니라,
경영 여건이 어려운 택시업계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.

이와 관련해 지난해 3월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이 개정되어,
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택시의 기본차령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

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.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이를 반영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
따라서 서울수도 차량의 평균 주행거리와 운행 실태를 고려해, 합리적으로 기본차량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. 이를 통해 자원 낭비를 줄이고, 택시업계의 부담을 덜며, 차량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.

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,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